

학생학습역량강화지원 규정

제정	2016.03.01.
개정	2016.10.31
개정	2018.01.02
개정	2018.12.24
개정	2023.08.21
개정	2025.03.1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학습역량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,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 하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의미한다.
- ② 학습역량강화 교육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인문기초소양 등의 기초학습능력과 문화창의 인재로서 필요한 가치관 함양, 전공 및 범교과적 학습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, 문학, 역사, 철학 등의 관련 교육, 지원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.
- ③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이란 국어, 수학, 외국어, 사고영역 등의 기초과목 및 전공 학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초학습능력 향상지원프로그램을 의미한다.
- ④ 삭제

제4조(담당부서) ① 학생학습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의 담당부서는 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5조(프로그램 운영) ①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학생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에서는 학생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센터 외 행정부서와 스쿨에서도 학생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, 센터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센터에서는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본교의 프로그램 개발, 운영내용, 체계, 프로그램 만족도, 결과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.
- ⑤ 제3조 ②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

제6조(기타)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센터 명칭 변경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